국방부고시제2020-42호

「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「제1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수립·고시합니다.

2020년 12월 31일
국방부장관

제1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

1. 수립배경

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 방지와 소음 저감을 위한 각종 활동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주기의 「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고시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계획의 근거 및 성격

○ 근 거 : 「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군소음보상법”이라 한다) 제7조

○ 성 격 : 「군소음보상법」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며, 군 소음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정책계획임

나. 계획의 범위

○ 시간적 범위 : 2021년～2025년(5개년)

○ 공간적 범위 : 전국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중 「군소음보상법」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소음대책지역

*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해 2021년 하반기부터 순차 지정·고시 예정

다. 계획의 주요내용

○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대책의 기본방향
○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저감 방안
○ 소음피해 보상 방안
○ 재원조달 방안
○ 기타 소음 저감에 필요한 사항

라. 계획의 추진경위

○ 2019. 11. 26. :「군소음보상법」제정 (시행일 2020.11.27.)

○ 2020. 11. 24. :「군소음보상법 시행령」제정 (시행일 2020.11.27.)

○ 2020. 12. 24. :「제1차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기본계획」수립

마. 시행일 : 2021. 1. 1.

3. 세부 수립내용

○ 세부 수립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(www.mnd.go.kr> 국방소식>알림>고시공고)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